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2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2. 공고기간 : 2026. 7. 24. ~ 2026. 8. 7.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 대 상 자 |                           | 처분내용    | 청문일시       | 반송일                  | 반송사유 |
|-------|---------------------------|---------|------------|----------------------|------|
| 성 명   | 주 소                       |         |            |                      |      |
| 김**   | 서울시 중랑구<br>면목로44길<br>**-* | 장애인등록취소 | 2027.7.27. | 2026.7.22.<br>(등기우편) | 폐문부재 |

나. 청문장소: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51길 48 면목제3.8동 주민센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등급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보

5.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6. 이의신청

가. 제출처 : 면목제3.8동 주민센터 돌봄지원팀(☎02-2094-6655)

나. 제출기한 : 2026. 8. 3.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7. 유의사항

- 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